

'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(안)

의안번호	159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2. 11.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 안 이 유

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 요 내 용

- 공유재산 매각처분 : 1건 1필지 44㎡
- 공유재산 사용허가 토지 1건 1필지 116.7㎡
 건물 1건 116.7㎡

3. 재산의 표시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소 재 지	지목 (구조)	전체면적	신청면적	재산가격 (공시지가)	비 고
매 각	괴정동 435-22	대	44	44	44,000	
사용허가	당리동 317-16 〃	대	4,733.8	116.7	1,780	토지
		철 근 콘크리트	4,151.14	116.7	720	건물

4. 근 거

-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2 제1항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

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

9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 고
			건 수	수 량	금 액	건 수	수 량	금 액	건 수	수 량	금 액	
취득처분	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1. 매 입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2. 교환으로 취 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3. 기타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4. 매 각	토지 건물 기타	1	44	44,000				1	44	44,000	
분	5. 양 여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6. 교환으로 처 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사용 및 대부허가						2	233.4	2,500	2	233.4	2,500	
						1	116.7	1,780	1	116.7	1,780	
						1	116.7	720	1	116.7	720	

'93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(7-4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번호	재 산 표 시			매각대상수량	과표또는평가액	매각시기	매각사유	매수희망자 주소·성명	비 고
	지 목	소 재 지	일단의수량						
1	대	괴정동 435-22	44	44	44,000	2/4	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	괴정동 435-22 주창호	
				이	하	여	백		
계	토 지	괴정동 435-22	44	44	44,000	2/4	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	괴정동 435-22 주창호	
	건 물								
	기 타								

주. (1)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: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.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○○필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.

(2) 일단의수량 : 일단의 토지(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)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.

(3) 매각대상수량 :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.

(4) 과표 또는 평가액 : (3) 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.

(5) 매각시기 :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.

(6) 매각사유 :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
(유상)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(7-6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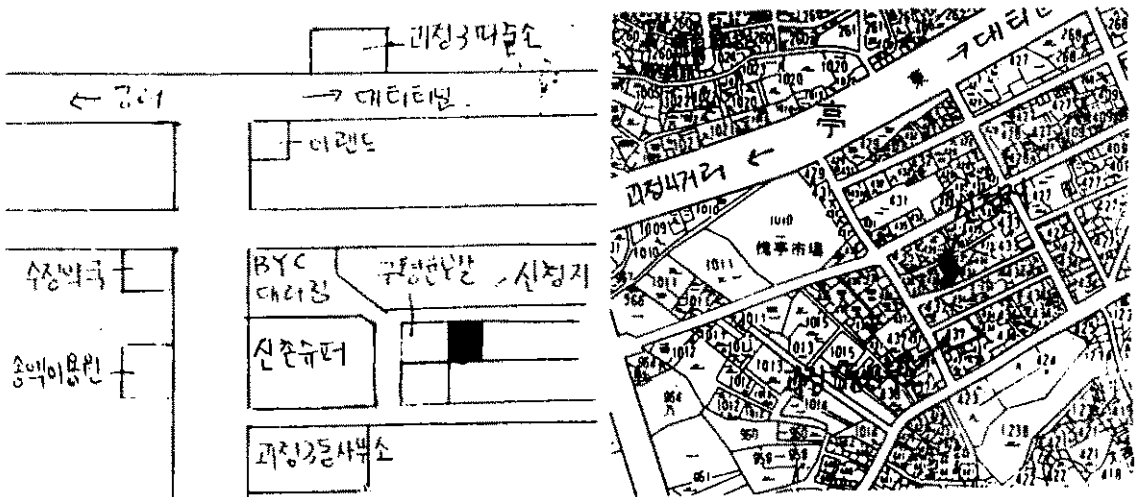
일련번호	재 산 의 표 시				재산가액	허가기간	대부및사용 허가용도	요 율	추정대부 (사용)료	대부및(사용허가) 방 법	비고
	종 별	소 재 지	지목구조	수 량							
계	토 지	당리동 317-16	대	116.7	133,083	93.10.1	구내식당	40/1,000	1,780	수의회약	
	건 물	〃	철근콘크리	116.7	18,088	-94.9.30	〃	〃	720	〃	
	기 타		트스라브								
1	토 지	당리동 317-16	대	116.7	133,083	93.10.1	구내식당	40/1,000	1,780	수의회약	
2	건 물	〃	철근콘크리	116.7	18,088	-94.9.30	〃	〃	720	〃	
			트스라브								

공 유 재 산 실 태 조 사 표

1. 재산의 표시

소	재	지	지	목	면	적(m ²)	용	도	지	역	점	유	자	주	소	성	명
괴정동	435-22		대		44		주거	지	역		괴정동	435-22		주	창	호	

2. 위치도



3. 재산의 현황

- 이 재산은 89. 5. 4 부산시에서 승계받은 재산으로 위치상에 81. 4. 30 이전부터 신청인 소유의 브록스레트 건물이 점유되어 있음.
- 괴정 3동 사무소 건너편에 위치하며 13평 정도의 규모로 작은방 2칸, 재래식 부엌 1칸, 화장실 1칸이 있음.
-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 주위는 주택들이 밀집해 있음.

4. 처리의견

위 재산은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보존의 가치가 없으며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처분 동의 및 가격감정 평가후 점유현황대로 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.

5. 매각근거 :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2 제1항

공 유 재 산 실 태 조 사 표

1. 재산의 표시

구 분	소 재 지	지목(구조)	면 적 (㎡)	사용자 주소	성 명
대 지	당리동317-16	대	116.7	당리동 327-33	박 명 자
건 물		철근콘크리트 스 라 브	116.7	〃	〃

2. 위 치

사하구청 구내식당(본관 지하)

3. 재산의 현황

사하구청 본관 지하에 위치하며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음

4. 처리의견

우리구의 구내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가격감정 평가후 사용허가 하고자 함

5. 사용기간

1993. 10. 1~1994. 9. 30

근거법규

○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

제37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1.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.

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○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2 제1항

제38조의 2(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수익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,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(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평방미터 이하, 시 지역에서는 300평방미터 이하, 기타 지역에서는 4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)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.

○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

제88조(잡종재산 대부) 1.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.

7.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.